

개정일: 2026. 8. 21.

시행일: 2026. 8. 21.

정 관

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백석문화대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2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의2(기부·출연재산의 사용 및 반환) 본 법인이 기부·출연 받은 재산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기부·출연 받은 재산 중 지정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본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3호의 경우는 신고)를 받은 후 이를 그 기부·출연자에

게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법인회계는 이사회·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결로 확정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학교회계 집행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② 이사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은 개방이사로 선임한다.

③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이 때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 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이사장 등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9조(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추천을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이사장 및 부이사장)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조교임용사항은 제외한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와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이사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하고,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해당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이사회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29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평의위원회의 구성)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대표 5인
2. 직원 대표 5인
3. 조교 대표 1인
4. 학생 대표 2인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제31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5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교육 및 교재개발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5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37조(관리인) ① 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0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 제41조(임용)** ① 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② 총장 이외의 대학 교원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재임용·승진임용·직위해제는 총장이 임용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의 대학의 교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 임용한다. 다만,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8조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학과)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실적·연구실적·논문지도·사회봉사·진로지도기획·평가·학생안전(양호)·산학협력·대학발전에 협조와 공헌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계약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2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은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기획·평가·상담·산학협력·학생안전(양호)·정체성구현 등 전공분야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이외의 교원 및 조교의 임용과 교원의 보직 발령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⑧ 교원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 및 계약기간(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이 면직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2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사·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기타 휴직 청원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3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2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이를 분할하

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연수기간으로 한다.

8. 제4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2조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5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42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7할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6할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41조 제7호, 제7호의2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6조(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제47조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학과·학부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7. 임용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해태하거나 또는 학교의 정상적 유지·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8.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7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제48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대학교 강사 및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겸임교원 등의 경우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을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을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③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정년 초과자의 경우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계약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1조(명예퇴직 등 수당) 명예퇴직 등 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3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겸임·초빙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5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6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9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0조(운영규정)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2조(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위무를 위반한 경우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5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6조(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제척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9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알려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④ 징계 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0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의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75조(직종등) ①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 한다.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무 또는 한시적 프로젝트수행 및 설립이념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계약제직원의 임용·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

제76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한다.

-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④ 직원의 임용과 처·실장(급)이상의 보직발령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79조(명예퇴직 등 수당) 직원의 명예퇴직 등 수당에 관하여는 법인정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80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본 법인 및 학교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82조(징계)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3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본부를 둔다.

② 법인본부에는 총괄본부장, 본부장, 실장, 국장, 부국장, 차장 및 과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총괄본부장, 본부장, 실장, 국장 및 부국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 사무직원으로, 차장은 5급 이상 과장은 7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2 절 백석문화대학교

제84조(총장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교육이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백석정신아카데미를 설치하고 백석정신아카데미에 총재와 부총재, 사무총장 등을 둘 수 있다.
- ④ 대학교에 총괄부총장, 학사부총장 등을 둘 수 있다.
-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괄부총장·학사부총장 등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부총장의 직무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대학교에 본부장 및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을 둘 수 있다.
- ⑦ 각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둔다.
- ⑧ 본 대학교에 도서관, 교수학습개발원, 평생교육원, 예비군연대본부 등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을 둘 수 있다.
- ⑨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외에 필요할 경우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⑩ 대학교 발전에 필요한 경우 명예총장·명예부총장을 둘 수 있다.

제85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총장은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종류, 명칭, 사업종목, 소재지 등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87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 8 장 법인 임직원 및 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88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89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9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1조(설립자) 백석문화대학교는 설립자 장종현 박사의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건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92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년)	주 소
이사장	장 택 현	1947.01.28.	4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35,*** **
이 사	이 경 직	1964.06.12.	4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41, *** **
이 사	이 계 영	1962.12.01.	4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35, *** **
이 사	임 미 립	1967.11.11.	4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8, *** **
이 사	나 성 식	1963.06.06.	4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1길 68, *** **
이 사	오 명 진	1978.04.01.	4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7길 14, *** **
이 사	한 재 덕	1964.05.07.	4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해솔1길**
이 사	김 성 호	1966.01.07.	4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8길 21, *** **
감 사	박 철 웅	1963.04.18.	3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41, *** **
감 사	강 희 일	1972.11.17.	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47, *** **

제93조(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 이 법인의 설립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의 현황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교직원 중 백석문화대학교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 (총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백석문화대학교의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한 법인의 이사장이 백석문화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 (기타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기간 및 처우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제7호의2 및 제42조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제44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수당의 지급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총 계	4 명
일반직	4 명

<별표 2>

백석문화대학교 사무직원 정원

총 계	140명
일반직	78명
기능직 (영선, 운전 등)	62명

<별표 3>

출연재산 중 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에 출연한 자 현황

순번	출연자 인적사항	출연재산내역					출연의사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평가금액(원)	평가 기준		
1	장종현 (1949.8.19.)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93	95,326	1,838,255,560	장부 가액	백석문화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	
2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95	394	10,000,000	장부 가액		
3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403	2,982	68,000,000	장부 가액		
4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120	198	5,000,000	장부 가액		
5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5	347	12,000,000	장부 가액		
6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86	2,975	90,000,000	장부 가액		
7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1-1	33,058	1,300,000,000	장부 가액		
8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87	57,620	848,243,630	장부 가액		
9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8-1	565	4,930,000	장부 가액		
10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6-3	942	8,220,000	장부 가액		
11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79	35,542	322,807,000	장부 가액		
12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81-1	7,339	64,043,000	장부 가액		
13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40	185	24,601,000	장부 가액		
14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41-1	615	81,782,000	장부 가액		
15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41-2	704	93,617,000	장부 가액		
16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42	760	100,000,000	장부 가액		
17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45-8	1,964	343,000,000	장부 가액		
18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43	605	138,000,000	장부 가액		
19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44	899	462,980,000	장부 가액		

순번	출연자 인적사항	출연재산내역					출연의사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m²)	평가금액(원)	평가 기준		
20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93-4	673	242,280,000	장부 가액		
21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1-7	99	24,000,000	장부 가액		
22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1-9	6,534	1,603,700,000	장부 가액		
23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391	1,250	631,250,000	장부 가액		
24		토지	충남 천안시 안서동 92-1	303	253,789,500	장부 가액		
25		토지	충남 천안시 청당동 551	2,685	7,776,812,020	장부 가액		
26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62-1,62-23,63	27,591	8,174,946,400	장부 가액		
27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2-1	747	101,990,000	장부 가액		
28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93-2,94,102-6	7,054	1,068,100,000	장부 가액		
29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66-1,66-15	1,212	494,805,380	장부 가액		
30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66-2	10,748	4,232,992,800	장부 가액		
31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산49	55,041	2,730,000,000	장부 가액		
32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102-10	238	35,276,000	장부 가액		
33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89	3,074	585,838,100	장부 가액		
34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46-1,46-3,46-5,64-3	4,178	759,328,400	장부 가액		
35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7-1,7-2, 송남리137-1	2,603	1,621,704,000	장부 가액		
36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29-3,29-5,29-6,29-7	4,330	852,390,000	장부 가액		
37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31-5,31-6,31-7	6,140	1,208,676,300	장부 가액		
38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82,84	4,625	910,376,500	장부 가액		
39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4-1,31-8,78-1,79,80	8,383	1,650,071,400	장부 가액		
40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12	1,977	389,395,200	장부 가액		

순번	출연자 인적사항	출연재산내역					출연의사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m ²)	평가금액(원)	평가 기준		
41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11,15-3,16-6	2,001	393,958,000	장부 가액		
42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81,83,86,87	7,477	1,471,747,500	장부 가액		
43		토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90-1,90-4	1,396	168,000,000	장부 가액		
44		건물	충남 천안시 안서동 393외 7필지	11,238.26	5,865,781,200	취득 가액		
합 계					49,062,687,890			